

피터 싱어 시민 불복종

1. 공리의 원리

불복종의 이익(정의 달성) > 비용(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감소 등의 사회적 혼란)

=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그리고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을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2. 대상 : 부정의한 일부 법/제도

1) 다수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은 법, 정책

= 다수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도록, 설득의 수단

2) 다수의 의견이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

= 민주주의(다수결) 원칙에 대한 거부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를 전제로 함.

3. 정당화 근거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행위이나, 양심이 정당화의 근거는 아님.

1) 민주적 절차(합법적인 수단) 준수

-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 : 보편적 법치 체제 및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
- 비폭력적 행위
- 처벌 감수 :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표현



2) 최후의 수단

-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무력화가 아닌 복원의 목적.

따라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복종의 강도가 아님.

-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존재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참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의 사용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하면서,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EBS/기출 심화 제시문

시민 불복종을 결심할 때에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시민 불복종에서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나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
2.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려는 것이다.
3.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원칙과 질서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4. 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에도 그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5.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것이다.
6.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7.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다수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법은 제외된다.
8. 공유된 정의관에 대한 변경을 촉구하는 불복종도 가능할 수 있다.
 - 다수의 의견이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면 불복종의 대상이다.
 - 즉, 싱어는 공유된 정의관도 잘못되었을(=공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9. 합법적 수단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폭력을 제외한 불법 수단의 사용은 정당화된다.
10. 시민 불복종의 해악은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11. 다수가 아닌 소수의 시민이 제기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기출 선지

[2021학년도 6평]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에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④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2022학년도 9평]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2023학년도 6평]

시민 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은 저울질해 봐야 한다.

ㄹ.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 또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학년도 9평]

시민 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ㄱ.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 합법적 수단으로 불복종의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 수단이 사용 가능하다.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불법적 수단) 사용 가능

[2023학년도 수능]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에 미칠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2024학년도 6평]

시민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한다.

[2025학년도 6평]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 ㄴ.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은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이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

피터 싱어 환경 윤리

동물 중심주의

1. 공리주의

동물 또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님.

그렇기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은 이익 관심을 지님.

그러므로 이러한 동물들은 공리의 원리에 포함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

2.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

따라서 특정 종의 이익을 옹호하며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함.

=종차별주의 반대.

3. 그러나

1)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 뿐.

2) 동물의 도구적 가치 인정

공리의 원리에 따라, 동물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수단에 비해 크다면 동물 실험 허용.

그러나 동물의 고통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타 동물과 인간은 서로 이익 관심의 대상이 다르기에 동일한 대우 X.

EBS/기출 심화 제시문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돌맹이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익 관심을 지닐 수 없다. 그리고 이익 관심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최소한 고통받지 않을 이익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나는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동물이 우리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인종차별론자와 비슷해진다.

감각적 존재들은 의식을 가지는 한, 그것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익, 가능한 한 많은 쾌락과 적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이득을 갖는다. 감각은 한 존재를 이익 평등 고려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그 존재가 계속 살고자 하는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고통스러운 유전자 조작은 당연히 재고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이런 기술은 비도덕적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절대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제 결정이나 도덕적 선택은 그 결과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나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 이용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의 목표가 중대한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싱어에 의하면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 요청된다.
2. 이성은 없지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3.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4. 인간과 모든 동물은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 뿐이다.

5. 성장한 포유동물일지라도, 공리의 원리에 따라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6. 자연의 생명체 중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생명체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7. 종의 차이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그 종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8. 그러므로 감각과 의식이 없는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기출 선지

[2014학년도 6평]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2014학년도 9평]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도덕적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존재의 고통과 다른 존재의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리가 요청된다.

[2014학년도 수능]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자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2015학년도 9평]

자기가 속한 종의 이익을 응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차별적 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착치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2015학년도 수능]

단지 호모 사피엔스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다. 쾌고 감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ㄱ.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ㄹ. 식물은 쾌고 감수 능력이 없으므로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2016학년도 6평]

인종이나 성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른 것처럼, 우리 종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⑤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생물들에 한해서만.

[2018학년도 6평]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2018학년도 수능]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2019학년도 6평]

도덕적 기준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21학년도 6평]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 ㄹ.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부여된다.

[2021학년도 수능]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만약 한 존재가 쾌고를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2학년도 9평]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 차별주의적 태도이다.

[2023학년 6평]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2023학년도 수능]

인간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관행은 동물의 이익을 침해한다. 우리에게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이런 관행을 막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ㄷ.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쾌고감수능력)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2024학년도 9평]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동물→인간이 아닌, 애초에 동물과 인간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함.

[2024학년도 수능]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2025학년도 수능]★★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기 위한 요구의 전제 조건이다.

- ㄴ.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터 싱어 해외 원조 윤리

1. 싱어의 원조

고통없는 개인 또는 국가(주체)가 고통받는 개인 또는 국가(대상)를 돋는 것.
공리 증진의 **의무**. 그러나 **무조건적이지 않음**.

2. 원조의 목적

공리의 증진 = 인류 행복의 합 증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원조

공리의 원리에 따르기에, 고통을 창출하는 모든 빈곤은 해결되어야 함.
그러나 절대 빈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3. 세계시민적 원조

국적을 고려한 원조가 아닌, 부의 정도를 바탕으로 원조의 우선성 정함.
자국의 부조 = 해외의 부조
이러한 전세계적인 원조를 통해 절대빈곤은 해결이 가능함.

4. 원조의 의무가 없는 경우

- 1) 공리의 원리에 따라,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작을 경우.
- 2) 절대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으로만 고통받는 경우.
- 3) 원조의 효과가 없는 경우.
- 4) 원조의 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EBS/기출 심화 제시문

유럽계의 사람들은 빈곤한 아프리카인들을 돋기 전에 빈곤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사회는 다양한 사회 중의 하나일 뿐이며,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이익이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유사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적, 민족에 상관없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해외 원조를 이행해야 한다.

원조는 공리주의 입장에 기초해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의 감소와 기본적 욕구의 충족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있다. 세계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도 전에 죽어나갈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에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돋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1. 싱어는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의 원조로 전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2. 싱어는 원조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익을 증진시키는 공리주의적 의무라고 보았다.
3. 싱어는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원조를 개인적 차원의 의무로 규정한다.
4.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 관계없이 극단적 빈곤을 막을 의무가 있다.
5. 인류의 부의 수준을 균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6. 원조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는 결과를 목적으로 원조하여야 한다.
7. 원조 시행 시 원조 주체의 이익과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8. 원조는 도덕적 의무의 문제이나, 공리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 또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9. 원조는 국가, 비정부 단체, 또는 개인의 의무이다.
10. 원조는 원조 주체의 경제력을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11. 부유한 국가의 시민이더라도, 빈곤으로 고통받는다면 원조의 대상이다.
12.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은 원조의 의무를 진다.
13. 원조는 돋는 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14. 원조는 선진국에 사는 국민 뿐만 아니라, 빈국에 사는 부자에게도 의무이다.
15. 달러 당 최대 효용을 고려할 때, 해외에 베풀 수 있는 선행의 양이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훨씬 압도한다.
16. 원조와 관련하여, 정치 문화 개선보다 절대 빈곤의 해결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17. 전 세계적인 원조를 통해 절대 빈곤은 해결이 가능하다.

기출 선지

[2015학년도 6평]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① 해외 원조는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가보다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원조를 해야 하나, 국가도 원조 대상으로 성립 가능함.

[2016학년도 9평]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

[2016학년도 수능]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⑤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2017학년도 6평]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

[2017학년도 9평]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④ 해외 원조와 사회 내 부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2017학년도 수능]

타인이 굶주릴 때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

[2018학년도 6평]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죽어 나갈 것이다. 원조의 의무는 인류 전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⑥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닌, 절대 빈곤을 해결하여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2018학년도 9평]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⑤ 원조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빈곤한 나라일지라도 원조의 효과가 비용보다 작다면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로운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2019학년도 6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 중 일부는 기부해야 한다.
원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2019학년도 9평]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2019학년도 수능]

인권 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돋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 국제 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지구 상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개인들을 도와야 한다.

[2020학년도 6평]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②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원조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얻는 원조가 정당한 것이다.

[2020학년도 9평]

절대 빈곤은 나쁘다. 어떤 저대 빈곤이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훈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방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절대 빈곤을 막아야만 한다.

[2020학년도 수능]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ㄴ. 원조의 의무와 부담을 지는 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도 잉여가 남는 자들에 국한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원조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2021학년도 6평]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돋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2021학년도 9평]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원조는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⑤ 다른 나라에 빈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조의 의무가 정당화된다.

[2022학년도 6평]

자국민을 돋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ㄴ.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한테 원조받아야 한다는 말이랑 같음.

[2022학년도 9평]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쾌락 증진과 고통 감소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원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우리의 풍요로움을 우리 사회의 시민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 ④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학년도 6평]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 ㄱ. 원조의 목적은 정치 체제의 개선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 향상이다.

[2023학년도 9평]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을 막기 위해 원조해야 한다. 그들이 소득의 1퍼센트 정도만 기부하면 전 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 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2023학년도 수능]

절대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돋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절대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돋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이다.

- 원조가 법적 의무임을 의미하지 않음.

[2024학년도 6평]

절대 빈곤은 매우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회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인류 복지의 최대화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2024학년도 9평]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 ①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이나, 원조 주체의 부담 또는 결과의 유용성 등에 따라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2025학년도 6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이익 평등 고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 ㄴ.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는 둘 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2025학년도 9평]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 ㄷ. 공리의 증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원조를 통해 공리가 증진되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2025학년도 수능]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